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51424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12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5142489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양성우

변론종결 2021. 10. 20.

판결선고 2021. 12. 15.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573,219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73,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77011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970,798원 및 그 중 7,187,281원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1. 21.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20. 1. 2.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F, G, H, C은 2020. 1. 2.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3.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이에 기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3. 2. 접수 제172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협의는 24,573,219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4,573,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C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이 피고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사해의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65. 5. 12.부터 2020. 1. 2.까지 망인과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약 54년에 이르는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피고는 혼인생활 중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C 등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과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망인이 2011년 9월경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구매하는 과정에서 1억 2,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위 차익 상당액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1년 9월경 만 67세, 사망 당시 만 76세의 비교적 고령이었고,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특별히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망 전 질병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비록 피고가 2020. 4. 17.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6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나, 위 매도대금 중 약 7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 대부분을 장남과 함께 살기 위해 현재 거주지인 아파트 전세금 일부로 사용하였을 뿐인 점(망인 사망 후 별다른 소득 없이 홀로 남게 된 피고가 여생을 대비하여 불필요한 이자 등의 지출을 줄이고 보다 좁은 거주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액수뿐만 아니라 C의 상속지분(2/11)의 가액도 특별히 거액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있어 C은 I생의 장성한 아들로 2000. 12. 23. 혼인하여 분가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C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피고가 2015. 1. 6.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직접 송달받아 C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송달 당시 만 72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피고가 위 결정

등본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채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도 5년이 지난 후에야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피고의 채무자인 C 뿐만 아니라 망인의 나머지 자녀 3명 모두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자녀들이 소득이 없는 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뜻을 모은 결과로 보이는 점(이러한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채무초과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과 더불어,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부동산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 그와 같은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으로 인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별지

부동산목록

[집합건물] 경기도 파주시 J외 12필지 K아파트 E호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J, L, M, N

경기도 파주시 O, P

경기도 파주시 Q, R, S, T, U, V, W

K아파트 X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Y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25층 아파트

1층 414.264㎡

2층 414.264㎡

3층 414.264㎡

4층 414.264㎡

5층 409.224㎡

6층 409.224㎡

7층 409.224㎡

8층 409.224㎡

9층 409.224㎡

10층 409.224㎡

11층 409.224㎡

12층 409.224㎡

13층 409.224㎡

14층 409.224㎡

15층 409.224㎡

16층 409.224㎡

17층 409.224㎡

18층 409.224㎡

19층 409.224㎡

20층 409.224㎡

21층 409.224㎡
 22층 409.224㎡
 23층 319.098㎡
 24층 319.098㎡
 25층 319.098㎡
 지하층 410.6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파주시 J 대 54056㎡
2. 경기도 파주시 L 대 1818㎡
3. 경기도 파주시 M 대 4804㎡
4. 경기도 파주시 N 대 1880㎡
5. 경기도 파주시 O 대 1380㎡
6. 경기도 파주시 P 대 132㎡
7. 경기도 파주시 Q 대 219㎡
8. 경기도 파주시 R 대 44635㎡
9. 경기도 파주시 S 대 189㎡
10. 경기도 파주시 T 대 692㎡
11. 경기도 파주시 U 대 157㎡
12. 경기도 파주시 V 대 390㎡
13. 경기도 파주시 W 대 6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0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84.942㎡

(대지권의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소유권대지권
 110416분의 34.311

위 부동산 중 2/11지분 끝.

